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실손의료보장 계약전환제도 특약

2.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적용대상 및 방법

- 1)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계약(이하 ‘전환전계약’ 이라 함)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6년 5월 6일 이후 판매되는 ‘무배당 5세대 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 상품(이하 ‘전환후계약’ 이라 함)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함.

다만, 전환전계약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인 경우에 한함.

- 2) ‘1)’의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함.

- 3) 전환전계약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함.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유효한 보험계약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에서 정한 노후실손 의료보험은 제외함

- 4) ‘3)’의 실손의료비 보장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대상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함

상품명	판매기간	보장종목
무배당 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09년 1월 2일 ~ 2009년 9월 30일	종합보장형 질병보장형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종합형 질병형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09년 12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종합입원형 종합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상품명	판매기간	보장종목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II(갱신형)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무배당 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14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무배당 알리안츠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3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무배당 알리안츠뉴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4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무배당 ABL인터넷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7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7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무배당 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	2021년 7월 14일 ~ 2026년 5월 5일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계약전환용)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

나.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보장내용

- 1)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함. 다만,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함.

보장종목 (전환전계약)	보장종목 (전환후계약)	
	주계약	특약
종합입원형	질병급여형 상해급여형	질병비급여형 상해비급여형
종합통원형		
종합보장형		
종합형	질병급여형	질병비급여형
질병보장형		
질병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급여형	상해비급여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급여형	-
질병급여형		
상해급여형	상해급여형	-
질병비급여형	-	질병비급여형
상해비급여형	-	상해비급여형

주) 주계약 : 무배당 5세대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

특약 : 무배당 5세대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계약전환용)

무배당 5세대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계약전환용)

주) 무배당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계약전환용)의 3대비급여형의 전환

및 전환후계약 중 3대비급여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2) 전환후계약의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는 전환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3) 전환후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공제비율, 보장내용은 전환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기타

- 가. 전환후계약은 ‘무배당 5세대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의 약관 및 이 특약의 약관 내용을 따름.
- 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전환이 제한되거나 전환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다. 전환전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계약에도 효력이 계속됨.
- 라.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은 전환전계약을 따름.
- 마.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전환청약시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보장내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함.
- 바.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본 사업방법서 및 약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특약, 전환 특약 등)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